

적, 신체적 피해가 우려되는바,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매연, 분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95년 개통과 동시에 설치하여 달라는 청원임.

3. 취지설명의 요지(소개의원 윤명규의원)

본 청원은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인접주민들이 밤낮으로 매연, 분진, 소음등에 시달려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피해가 우려되는바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는 제반시설을 개통과 동시에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인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원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청원인과 더불어 의회에 요망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마포구를 관통하는 내부순환 도시고속화 도로의 개통으로 마포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분산효과는 물론 혼잡한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등의 유익한 면도 있다고 사료는 되나, 반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극심한 생활 피해도 심히 우려되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복지 구현과 예방행정 차원에서도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주체측에 청원인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론요지

전병만 위원 :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심사결과 의견 : 별 첨

10. 기타사항 : 없 음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 청원에대한외견서

- 본 청원은 1995년 6월경 개통될 예정에 있는 내부순환 도시고속화 도로의 개통에 따른 차량의 소음, 분진 및 매연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개통후 예상되는 생활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음벽등 제반시설을 개통과 동시에 설치완료해 줄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 본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구청사와 구의회청사 앞을 관통하는 내부순환 도시고속화 도로가 개통되면, 소음피해로 말미암아 구청 업무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예상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주체측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방음벽등 제반시설이 개통과 동시에 설치 완료되어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994. 11. 3.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10. 20.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1994. 10. 24.  
 다. 상정일자: 제2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11.3.)상정, 의결

영명)  
 가. 제출이유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재무과장 최

나. 주요골자  
 1) 매각 —— 3필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매각시기	매 각
합정동 461-19	대	22	하 반 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
하중동 29-6	대	83	"	"
하중동 56	대	28	"	"

2) 대부 —— 1필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매각시기	매 각
대흥동 298-4	대	66	하 반 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진재)

- 본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 합정동 461-9의 2필지의 매각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인근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 대흥동 298-4, 1필지의 대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 국가 또는 다른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거하여 마포경찰서 신흥파출소 재건축부지로 사용코자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임.

산파출소 뿐이고 국유나 사유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이봉형 위원): 대부기간이 2년인데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 답변(최영명 재무과장): 2년이 지나면 매각이나 재대부하게 됩니다.
- 질문(유남렬 위원): 구민회관을 지울려고 해도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짓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대부만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 답변(최영명 재무과장): 현재 상호 점유 부분을 내년 6월말까지 현황을 조사하여 상호교환등을 하여 정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문(유남렬 위원): 공유재산으로서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대부한 전수는 얼마나 되나?
- 답변(최영명 재무과장): 신흥파출소와 영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정에 의거 '94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함.

의안 번호	338
----------	-----

제출년월일 : 1994. 10. 20.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주요골자

1) 매 각 —— 3필지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

소 재 지	지목	지적(m <sup>2</sup> )	매각시기	매 각
합정동 461-19	대	22	하 반 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
하중동 29-6	대	83	"	"
하중동 56	대	28	"	"

2) 대부 —— 1필지

소 재 지	지목	지적(m <sup>2</sup> )	대부시기	대 부 사 유
대흥동 298-4	대	66	하 반 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

(다음 「페이지」에 계속)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예 산	건 수	수 량	예 산	건 수	수 량	예 산	
취	계	토 지	2	515.20	958,320	2	728.80	1,418,125	4	1,244	2,376,445	
		건 물	2	301.63		2	233.42		4	535.05		
득	매 당 초	토 지	2	515.20	958,320	2	728.80	1,418,125	4	1,244	2,376,445	
		건 물	2	301.63		2	233.42		4	535.05		
	입 변 경	토 지										
		건 물										
처	계	토 지	24	1,265.20	1,054,865	11	417.1	967,009	35	1,682.3	2,021,874	
		건 물	0	0	0	0	0	0	0	0	0	
분	매 당 초	토 지	24	1,265.20	1,054,865	8	284.1	843,750	32	1,549.3	1,898,615	
		건 물	0	0	0	0	0	0	0	0	0	
	각 변 경	토 지				3	133	123,259	3	133	123,259	
		건 물				0	0	0	0	0	0	
사용 및 대부허가	계	건, 토	1	192.07	25,929	1	66	131,340	2	258.07	157,269	
	당 초	건 물	1	192.07	23,929				1	192.07	25,929	
	변 경	토 지				1	66	131,340	1	66	131,340	

'94 년 도 매 각 대 상 목 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대 상 수 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시기	매 각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1	대	합정동 461-19	22	22	24,200	하 반 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	합정동 457-3 김영수 외 1인	
2	대	하중동 29-6	83	83	77,107	하 반 기	"	하중동 35 이삼용	
3	전	" 56	23	28	21,952	하 반 기	"	하중동 55 황경식	

관리계획변경(매각)재산내용

1. 재산의 표시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매수희망자 주소 및 성명	비 고
1	합정동 461-19	대	22	합정동 457-3 김영수와 1인	

2. 재산의 현황

- 위 치 : 합정동사무소와 망원정 사이에 위치한 일반 주거지역임.
- 이용상태 : 도로 개설 공사후 남은 잔

여 토지로서 현 나대지임.

3. 매각사유 : 지방재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 규정에 의거 매각

관리계획변경(매각)재산내용

1. 재산의 표시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매수희망자 주소 및 성명	비 고
1	하중동 29-6	대	83	하중동 35 이 삼 용	
2	" 56	전	28	하중동 55 황 경 식	

2. 재산의 현황

- 위 치 : 서강방면 강변도로 뒷편에 위치한 일반 주거지역임.
- 이용상태 : 매수 희망자가 주거용(전물)

및 적치물로 점유중임.

3. 매각사유 : 지방재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 규정에 의거 매각

관리계획변경(무상대부)재산내용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대부희망자 주소 및 성명	비 고
대흥동 298-4	대	66	아현동 618-1 마포경찰서장	대부기간 (2년)

2. 재산의 현황

- 위 치 : 대흥동 사거리에서 용강동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음.
- 사용목적 : 마포경찰서 신홍파출소 재건 축부지로 사용코저함.

3. 대 부 료 : 면제(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제2항제1호)

4.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1항

'84년도무상대부대상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번호	재 산 의 표 시			대 부 대 상 수 량	과표또는 평가액	대부시기	대 부	대부희망자 주소, 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1	대	대흥동 298-4	66	66	131,340	하 반 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	아현동 618-1 마포경찰서장	